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페이지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및 직무
- 제3장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 제4장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비
- 제5장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과 대책
- 부칙

작성부서	산학협력처	제정일자	2016. 09. 02.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활동 및 실험·실습수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또는 당해 실험·실습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연구활동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이 대학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습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말한다.
4. “실험·실습실 책임자”라 함은 실험·실습실의 제반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담당자”라 함은 “실험·실습실 책임자”와 협의하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실험실습을 하는 교직원, 대학생 연구원 등을 말한다.
7.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습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보호구”라 함은 사고 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 장비를 말한다.
11. “사고”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설비 등에 의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하거나 실험방법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12. “유해위험물”이라 함은 급성 및 특수독성 물질 등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을 말한다.

13. “중대 실험·실습실 사고”라 함은 실험·실습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실험·실습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안전환경관리자) 안전환경관리자는 이 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실 안점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사고의 기록·유지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6.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실험·실습실 책임자) 실험·실습실 책임자는 전공별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실험·실습실의 시설물, 장치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실별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파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09.29.>
6. 실험·실습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9.>
7. 그 밖에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항 <신설 2017.09.29.>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제7조(실험·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전공별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현황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 일상점검 여부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습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 ② 안전교육 및 훈련 이수
- ③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되며, 위원회는 실험·실습 관리위원회와 같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 확보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사고 또는 재해 대책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제10조(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교육의 방법은 집체, 사이버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 등이 있다.

제11조(안전점검) ① 실험·실습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② 안전점검은 실시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실 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 전기위험, 산업위험 등을 점검하고 일상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 안전점검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 해당 실험·실습실 중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실험·실습실에 대하여 매 2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7.09.29.>

제12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4장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비

제13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기관 내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바이러스, 소음 방사성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기관에서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5조(안전관련 예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범위 안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개정 2017.09.29.>

	규정	문서번호	TWP-A166
		제정일자	2016. 09. 0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일자	2017. 09. 29.
		개정번호	1

제5장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과 대책

제16조(긴급대처방안)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실험·실습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실험·실습실책임자는 보고 체계에 의해 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주관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09.29.>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18조(실험·실습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등) 실험·실습실 책임자는 실험·실습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시설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표식 또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험·실습실 유형별 안전수칙) 실험·실습실 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습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 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